

의안번호	2218594
의 퇴 인	김대식 의원
회 답 일	2026. 6. 23.
추 계 번호	26C1863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7조 (조사·질문 등)	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·변경·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,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 (조사·질문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재 아동수당 수급권의 확인과 관련된 조사는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음
 -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지급 신청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·변경·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,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 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

- 개정안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경우 그 조사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실시할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7조제1항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고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규모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 - － 참고로, 최근 경기도교육감은 출생 신고부터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양육 지원, 취학에 이르는 아동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는데, 이 경우 시스템구축 및 관리·운영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－ 그러나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가정할 경우에도,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의 연계 범위 및 관리 데이터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